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공 항 소 음 방 지 및 소 음 대 책 지 역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항소음 단위가 변경·시행(“23.1.1.”)됨에 따라 제도 변화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소음영향도 산정 등에 대한 주민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해 새로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항소음 단위 변경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지정의 예외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부칙 근거 신설(부칙 제2조 신설)
-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종전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지역은 최초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종전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 지역을 최초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예산 증가분은 현 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부족분 발생시 한국공항공사 부담으로 집행

다. 향후 계획

- 관련법령에 따라 항공수요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시
수요 재추정을 통하여 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재검토 추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2022. 10. ~ 12.)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협의 결과 규제 비
대상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대통령령 제32124호, 2021. 11. 16.)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이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함된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대통령령 제32124호, 2021. 11. 16.> <u>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u> 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 터 시행한다. <u><신 설></u>	부칙<대통령령 제32124호, 2021. 11. 16.>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u> ----- ----- ----- -----. <u>제2조(소음영향도 기준 변경에</u> <u>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u> <u>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음대책지</u> <u>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이 제2</u> <u>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u> <u>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영</u> <u>시행 이후 최초의 소음대책지역</u> <u>지정·고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u> <u>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u> <u>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에 포</u> <u>함된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제11</u> <u>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u> <u>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영</u> <u>시행 이후 최초의 소음대책 인근</u> <u>지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u> <u>있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연 락 처	(044) 201 - 4341